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New Normal)을 찾아서

- 학부생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대안 모색 - * ** ***

윤성현(한양대학교 교수)

목 차

- I. 서론: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New Normal)을 찾아서
- II. 「학부 헌법과목 수강 및 헌법판례교육에 관한 설문조사」 개요 및 설계 의도
 1. 설문조사 개요
 2. 학부 법(학)교육 성격에 따른 그룹 구분 및 비교 설계
 3. 설문조사 질문 구성 개요
- III. 한양대·숙명여대·대구대·서울대 학부 헌법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1. 설문조사 1-5번 설문(헌법과목 수강현황)과 결과·분석
 2. 설문조사 6-15번 설문(헌법판례교육 현황과 수요)과 결과·분석
- IV.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 법(학)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목표 재정립과 융합교육·시민교육 강화
 1. 서설: 설문조사(III)에 나타난 헌법판례교육 현황과 학부생 수요
 2. 법전문 도입과 인공지능 시대 도래의 이중 파고를 넘어서
 3.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을 찾아서
- V. 결론: 학문의 자유의 확장으로서 헌법판례교육의 재구성

* 본 논문은 각자 담당하는 헌법수업의 학부생 설문조사를 도와주시고 설문결과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 주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문식 교수님, 정광현 교수님, 숙명여대 법과대학 유은정 교수님, 기초교양학부 정애령 초빙교수님,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김수용 교수님, 서울대 사회교육과 이수진 강사님, 김경래 조교님과 설문조사에 성의껏 참여해 준 한양대·숙명여대·대구대·서울대(이상 응답자 순)에서 개설된 8개 헌법 과목 수강생 161명 응답자들의 기여에 힘입은 바가 큼을 밝힙니다. 또한 초고를 읽고 설문조사 방법론에 관해 도움 말씀을 주신 한양대 정책학과 정치학 전공 함현호 교수님, 설문조사 도표정리 등을 도와준 한양대 정책학과 박사과정 최경원 연구조교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 본 논문은 2020년 한국법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ZOOM 온라인 웨비나, 2020.11.28.)에서 발표한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2000000003467)

현재 학부 법(학)교육의 부실화는 법전원 체제가 정밀하게 설계되지 않은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시대 혹은 소위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초래하는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도 학부 법(학)교육의 뉴노멀을 정립하도록 요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헌법교육, 그 중에서도 헌법판례교육으로 논의의 초점을 좁혀서 학부 법(학)교육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학부에서 헌법교육을 교육목적과 성격에 따라 ① 융합교육으로서의 법학전문교육 ② 법과대학에서의 법학전문교육 ③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의 시민교육 ④ 교양교육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러한 성격 구분에 상응하는 한양대, 숙명여대, 대구대, 서울대 등 4개 대학 학부의 8개 헌법 과목 수강생들에 대해 필자가 작성한 구글 설문지 링크를 제공해 설문조사를 하여, 오늘날 학부에서의 헌법교육과 헌법판례교육은 과거와 같이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대외환경의 변화에 맞서 개별화·다양화의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을 찾는 데는 로스쿨 제도를 먼저 시행한 미국 학부에서의 헌법판례교육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버클리 와 애머스트 대학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 대학에서는 헌법판례를 활용하여 전형적인 법해석론 수업이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이나 인문학과 융합적인 교육을 하는가 하면, 단순한 강의식 수업이 아닌 세미나와 글쓰기 방식 등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교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학부에서의 헌법교육, 특히 헌법판례를 활용하여 융합교육을 확대하고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뉴노멀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단순히 학부 법학교육의 개선책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와 연계하여 법전원 교육과 초중등교육 및 일반 시민교육 전반을 패키지로 개선할 때 더 의미 있는 뉴노멀로 기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주요어 : 법학교육, 법교육, 헌법교육, 헌법판례, 시민교육, 자유교양교육, 융합교육, 설문조사

I. 서론: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New Normal)을 찾아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으로 약칭) 체제의 도입은, 기존 사법시험 체제하에서 대학 법학교육이 충실히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반성과 전 대학이 고시학원화 하는데 대한 반성 등에서 출발했지만, 변화의 진폭이 상당한데 비해 현 체제가 도입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의도한 대로 긍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¹⁾ 그래도 법전원 체제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개선 논의라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반면, 학부 법학 혹은 법교육(이하 양자를 통칭할 때는 ‘법(학)교육’으로 약칭)의 문제는 지금껏 상대적으로 더 소외되고 외면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법전원 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공백이 생기거나 간접적으로 약화된 학부 법(학)교육의 복원과 재구성이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학과나 정원 수준 차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본질과 대학에서 양성할 인재상(지성인과 전인적 교양인)이라는 차원에서 더 근본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즉 변호사 양성 제도가 기왕의 ‘법과대학-사법연수원’ 체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옮겨갔다는 점이, 대학 특히 학부에서 법(학)교육의 중요성이 감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가·사회 각 분야의 법치주의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를 담당할 광의의 전문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legal education)과 또한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의 중요성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²⁾

-
- 1) 대표적으로, 김두얼,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재와 미래: 외부자의 시각”, 법경제학연구 13(1), 2016.4; 김창록, “한국 로스쿨의 의의와 과제 - ‘로스쿨 시스템’을 로스쿨답게 만들어야 -”, 저스티스 146(2), 2015.2; 박균성, “법학교육 상생방안”, 경희법학 50(4), 2015.12;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의 변호사 양성과 법학교육”, 민주법학 60, 2016.3; 이은기, “법학전문대학원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考- 교과과정, 교원충원, 평가제도 등을 중심으로 -”, 법조 68(4), 2019.8; 천경훈,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연구 36(1), 2017.5 등 참조.
 - 2) 윤성현,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학부 헌법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론- 시민교육과 광의의 전문교육의 투트랙(two-track) 교육방안 -”, 법교육연구, 2014.8.(이 글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실은 윤성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 학부 헌법교육 정

비록 현재 학부 법(학)교육의 공동화(空洞化) 혹은 주변화의 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법원원 체제가 정밀하게 설계되지 않은 채 도입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더불어 인공지능 시대 혹은 소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도 매우 큰 파고로 다가오고 있으며,³⁾ 학령인구의 감소라든가 2020년 이후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학부 법(학)교육의 뉴노멀을 정립하도록 요구하는 또 다른 동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의 전공분야이자 전문교육과 시민교육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법분야인 헌법교육, 그 중에서도 헌법판례교육으로 논의의 초점을 좁혀서 학부 법(학)교육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넘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을 찾는 단초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학부에서 헌법교육이 이루어지는 목적과 성격에 따라 ① 융합교육으로서의 법학전문교육 ② 법과대학 혹은 법학과에서의 법학전문교육 ③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의 시민교육 ④ 교양교육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러한 성격 구분에 대략 상응하는 한양대, 숙명여대, 대구대, 서울대 등 4개 대학 학부의 8개 헌법 과목 수강생들에 대해 필자가 작성한 구글 설문지 링크를 제공해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식의 설문조사를 설계하였고(II),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부 학생들의 헌법과목 수강 현황과 헌법판례교육의 실태

상화의 모색”, 국가와 헌법1: 헌법총론/정치제도론, 성낙인 총장 퇴임기념논문집, 법문사, 2018도 참조); 윤성현, “학부법학교육의 미래”에 관한 토론문“.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20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015.9.4., 202-203면도 참조.

- 3) 김대희, “4차산업 혁명시대의 법학교육”,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토론회 발제문,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한국법학교수회 주최, 2017.11.22; 이영록,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학부 법학교육은 어디로?”, 법학논총, 2017.12 참조. 특히 이영록 교수는,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 중에는, 다른 맥락에서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고등교육의 개혁의 큰 흐름에 일치하는 주장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그런 주장들이 시대적 요구라는 보다 능동적 맥락에서 제기되기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수동적으로 내몰린 불가피한 생존 전략 차원에서 대두되었다는 느낌이 강하다.”(이영록, 위의 논문, 5면)고 하면서 능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데, 필자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금 현재 학부 법(학)교육에 불어 닥친 직접적인 파도는 법원원 체제의 도입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조만간 사회 변화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훨씬 더 큰 파도가 물려올 것이므로 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능동적 대응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및 학생들의 교육수요를 가늠해보고, 이 결과를 다시 해당 과목 담당 교강사에게 의견을 구하여 결과 분석에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질적 보정을 피하고자 하였다(Ⅲ). 이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법전문 체제 도입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인한 법(학)교육의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로스쿨 제도의 모국인 미국에서는 학부 법학교육, 특히 헌법판례교육을 어떻게 운용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는지를 버클리 와 애머스트의 대학의 예를 찾아 비교해보고, 우리 학부의 경우 어떠한 방향으로 헌법판례교육의 조건을 구비하여 나가는 것이 중층적 변화의 시대에 상응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한 하나의 뉴노멀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Ⅳ).

Ⅱ. 「학부 헌법과목 수강 및 헌법판례교육에 관한 설문조사」 개요 및 설계 의도

1. 설문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는 학부 헌법과목 수강 및 헌법판례교육 설문조사를 통해 헌법판례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향후 학부 헌법교육 및 헌법판례교육을 위한 경험적 토대로 삼기 위해 지난 2020. 11.16(월)부터 19(목)까지 4일 동안 구글 설문지를 통해 시행하였다.⁴⁾

설문조사를 시행한 4개 대학 8개 과목 수업 개요는 아래와 같다. 대구대와 서울대의 사회교육과 수업의 경우에는 각각 2020-1학기에 헌법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서 설문조사 시점보다 한 학기 전 수강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그런 이유에서인지 서울대는 응답률이 가장 부진하였다. 이들 외의 6과목은 설문조사 시점인 2020-2학기에 진행 중인 과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4) 공지 과정에서 수업별로 다소 편차가 있어서 4일보다 적은 기간이 부여된 과목이 일부 있었으나, 기간의 장단이 응답률에 큰 차이를 가져온 원인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구글 설문지는 과목별로 각 8개의 별도 링크를 만들어 응답하도록 하여 혼선이 없도록 했다.

〈표 1〉 설문조사 대상 헌법과목 개요

대학교 개설단위	교과목명	교과 구분	학기	담당 교수	소속	수강 인원	응답 인원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법과사회	전공필수	3학년1학 기	김수용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30	15
서울대 사회교육과	시민교육과 헌법	전공필수	2학년1학 기	이수진	서울대 사회교육과	26	6
숙명여대 법과대학	헌법소송법	전공선택	2학년2학 기	유은정	숙명여대 법과대학	28	12
숙명여대 법과대학	미디어법	전공선택	3학년2학 기	정애령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48	13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사랑과헌법	교양	학년 제한없음	정애령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165	39 ⁵⁾
한양대 정책학과	헌법과기본권	전공필수	1학년2학 기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58	28 ⁶⁾
한양대 행정학과	헌법과기본권	전공필수	1학년2학 기	정문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61	32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헌법의이해 ⁷⁾	교양	학년 제한없음	정광현 서기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58	16

2. 학부 법(학)교육 성격에 따른 그룹 구분 및 비교 설계

필자는 종전 다른 논문에서 법전문 시대 학부 헌법교육의 목표를 시민교육과 광의의 전문교육의 두 트랙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⁸⁾ 본 연구에서도 같은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전문교육과 시민교육의 형태를 다시 각 2가지로 나누어 총 4그룹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보고자 한다.⁹⁾

- 5) 날짜가 지난 후에 1개가 더 도착했는데, 날짜 내에 도착한 39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 6) 날짜가 지난 후에 1개가 더 도착했는데, 날짜 내에 도착한 28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 7) 한양대 교양 ‘헌법의 이해’ 수업은 헌법과목이 전공으로 개설된 정책학과 학생들은 수강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수강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수업은 정광현 교수님이 전반기에 녹화강의를 진행하고, 후반기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서기석 법전문 석좌교수님이 실시간화상으로 판례세미나를 진행하는 오픈버스 강좌로 운영되고 있다.
- 8) 윤성현,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학부 헌법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론- 시민교육과 광의의 전문교육의 두트랙(two-track) 교육방안 -”, 법교육연구, 2014.8.
- 9) 4그룹에 더하여 정치외교학과나 (경찰)행정학과 등을 중심으로 특정한 분야의 전문

크게 아래의 4가지 그룹을 염두에 두고 4개 대학 8개 수업의 표본을 모집했다. ① 그룹 A: 법전원 설치대학의 비법학과로서 법학을 포함한 융합전공형태 학과인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와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의 헌법전공수업, ② 그룹 B: 법전원 미설치대학으로서 기존의 법과대학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숙명여대 법과대학의 헌법전공수업, ③ 그룹 C: 초중등 시민교육의 보루인 사범대에서 법교육을 담당하는 대구대 사회교육과와 서울대 사회교육과의 헌법전공수업, ④ 그룹 D: 마지막으로 숙명여대와 한양대의 비전공교육으로 행해지는 헌법 교양수업으로 구분했다.

〈표 2〉 학부 법(학)교육 성격구분 및 대상학과 수업분류

구분	학부 법(학)교육 성격 구분	대상학과 수업명
그룹A	법전원 설치대학 비법학과 법학 융합전공	한양대 정책학과/행정학과 헌법과기본권
그룹B	법전원 미설치대학 법과대학 법학전공	숙명여대 법학과 헌법소송법, 미디어법
그룹C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법교육전공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법과 사회, 서울대 사회교육과 시민 교육과 헌법
그룹D	교양과목 헌법	숙명여대 사랑과 헌법, 한양대 헌법의이해

그룹 A는 법학을 비법학과에서 융합전공의 일환으로 전문교육으로 가르치는 경우이고, 그룹 B는 법학교육만을 전문으로 하는 단과대학이라는 점에서 구분되지만 A와 B 모두 넓게 전문교육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보았고,¹⁰⁾

적·개별적 범수요에 부응해 이루어지는 소위 ‘단과대학별 전문법학교육’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여지는 있다. 전종익, “학부 법학교육의 미래”, 법교육연구 10(3), 2015.12, 81-82면 참조. 하지만 그것은 매우 다양하고 개별적이며 단편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것도, 공통점을 추출하는 것도 난점이 있어 전문교육과 시민교육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비교 연구하려는 본 논문에서는 별도로 고찰하지 않았다.

10) 다만,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한양대 정책학과는 PPEL(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Law)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그 중 법학(Law) 교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생들의 진로 측면에서도 법전원 진학 비율이 높아, Pre-Law의 성격도 일부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비해, 행정학과는 행정학을 중심으로 가르치

그룹 C는 사범대 사회교육과의 성격이 법학을 전공으로 하기보다 시민교육으로서의 사회교육 중에서 법교육을 일부 전공과목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사회교육과에서 헌법교육의 목적이 법학전문가를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등학교 교원 양성에 있음을 고려하여 시민교육으로 분류하였다.¹¹⁾ 그룹 D는 헌법 교양과목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시민교육의 성격을 띠는다고 보아, C와 D를 합쳐서 시민교육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들 A-D의 4개 그룹을 구분하여 보고자 한 것은, ① A, B(전문교육) vs C, D(시민교육) 2개의 그룹 간에 교육의 수요나 형태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또한 ② 같은 그룹 내에서도, A↔B 혹은 C↔D 간에 내적으로 개별적 차이나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지를 보고,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법전원 체제의 도입으로 인한 학부 법학교육의 공백 혹은 왜소화의 상황,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인한 대학교육 및 법학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라는 중층적 격랑을 맞아,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단초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3. 설문조사 질문 구성 개요

필자는 설문지를 학부 헌법판례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최대한 망라하여 폭넓게 구성해보려고 노력했다(1-15번, 연계 문제를 포함하면 총 20~21문항, 주관식 설문 2개). 특히 위에서 이론적으로 구분한 학부 법(학)교육의 성격 구분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요나 수업 방식 등에서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를 설문 응답 결과를 통해서 경험적·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질문 자체가 특정한 결과를 유도하거나 혹은 질문의 선택지가 한정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진정한 의사가 정확하게 조사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고 법학전공과목으로는 헌법과 행정법만 두고 있으며, 법전원 등 법학 관련 진로 비율도 높지 않아 양 학과는 구별되는 것이 사실이다(행정학과는 엄밀하게 따지면 개별전문법학교육을 하는 학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두 학과 모두 정책과학대학 소속이고 특히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헌법과기 본권은 양 학과에서 공히 1학년 2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기초(필수)과목으로 함께 분반하여 듣는 과목이므로, 본 설문조사에서는 편의상 한 그룹(그룹A)으로 묶었지만 양자의 차이도 살필 필요는 있다.

11) 그룹C는 교양과목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공과목으로 배운다는 점에서는 그룹 D와 구분된다.

필자가 생각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중립적으로 제공하고
 자 했고, 그래서 객관식 설문이었다도 답항의 마지막에는 ‘기타()’
 항목을 두어 주관식으로 별도의 답을 적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객관식 질문
 은 결과의 양적 계량화를 위해 1개의 답만 고르도록 했고, 되도록 하나의 답
 이 나오도록 묻고자 했지만, 중복선택이 가능한 일부 경우에는,¹²⁾ 추가적으로
 정성적 검토를 하였다.

Google 설문지를 이용한 비대면 응답 방식이고, 설문내용에 대한 사전 오
 리엔테이션 등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응답자가 설문의 의도를 정확
 히 이해하였는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독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
 해 사전에 동료 교수님들과 연구조교에게 설문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
 뢰하여 긍정적 답을 얻었고, 또 문항이 특별히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
 는 수강관련 일반적 내용들을 다룬 것이므로 대부분은 이해에 어려움은 없었
 으리라 생각한다.¹³⁾

〈표 3〉 그룹별 설문 참여자 수(단위 : 명, %)

구분	대학 및 강좌명	대학 및 강좌명	인원	비율
그룹A	한양대 헌법과기본권(정책)	한양대 헌법과기본권(행정)	60	37.3%
그룹B	숙명여대 헌법소송법	숙명여대 미디어법	25	15.5%
그룹C	대구대 법과 사회	서울대 시민 교육과 헌법	21	13.0%
그룹D	숙명여대 사랑과 헌법	한양대 헌법의 이해	55	34.2%
합계			161	100%

설문 1-5번은, 학생의 소속과 재학연한, 헌법 수강과목 수 등 기초정보를
 물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헌법 과목의 수강목
 적과 수강내용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는지, 나아가 6-15번에서 물을 헌법판례

12) 가령 설문4에서 헌법과목을 전공과목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13) 그럼에도 학생들의 기억의 오류나 판단 착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점은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들께 확인하여 간극을 메울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긴 질
 문에도 불구하고 주관식까지 모두 성실하게 응답해주었는데, 이는 무작위로 설문
 을 한 것이 아니라 담당과목 교강사님들을 통해 공지하고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으
 로 여겨진다.

교육에 대한 세부적 생각이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었다.

설문 6-15번은, A-D의 4개 그룹에서 헌법판례교육이 각각 어떤 형태와 내용,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1차적으로 파악하고, 또한 학생들이 바라는 헌법판례교육의 적절한 모습은 어떠한가도 동시에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① A, B(전문교육) vs C, D(시민교육), 2개 그룹간의 차이를 살피고, 나아가 ② 이를 다시 세분하여 A↔B, C↔D 간에도 설문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단, 양적으로만 확인하기 어려운 질적 차이의 경우, 혹은 학생들이 인식한 바와 해당 교강사가 인식하고 판단한 바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각 설문결과를 해당 교강사와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교강사의 해석과 의견을 들어서,¹⁴⁾ 양자의 편차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필요하면 결과해석을 수정, 보완하였다.

Ⅲ. 한양대·숙명여대·대구대·서울대 학부 헌법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1. 설문조사 1-5번 설문(헌법과목 수강현황)과 결과·분석

1. 귀하는 현재 학부에 몇 학기 째 재학 중인가요?¹⁵⁾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총 합계
①1학기	1				1
②2학기	42			36	78
④4학기	8	1	3	8	20
⑤5학기	1	1		1	3
⑥6학기	4	9	16	4	33
⑦7학기	2	8	2	1	13
⑧8학기	2	6		3	11

14) 정문식, 정광현 교수님은 학내에서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했고, 유은정, 정애령 교수님과는 실시간화상 형식의 온라인 회의를, 김수용, 이수진 교수님과는 전화통화를 하였다.

⑨9학기이상				2	2
총 합계	60	25	21	55	161

2. 귀하의 학부 소속은 어디인가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법학		19		3	22
②융복합학과로서 정책학과(한양대)	29			1	30
③사범대 (일반)사회교육			20		20
④(경찰)행정학과	19				19
⑤정치외교학과	1			1	2
⑥기타 사회과학	2	3		11	16
⑦인문	3	2	1	7	13
⑧경영	1			2	3
⑨경제	1			2	3
⑩공학				10	10
⑪자연계, 의약학				10	10
기타	4	1		8	13
총합계	60	25	21	55	161

3. 현재 수강중인 헌법과목 외에 과거에 수강하였거나 현재 동시에 수강하고 있는 다른 헌법과목들이 있나요? 있다면 총 몇 과목을 수강하였거나 하고 있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없다	42	2	5	38	87
②1과목	14	6	8	11	39
③2과목	4	7	5	5	21
④3과목		8	2		10
⑤4과목		2	1	1	4

15) 교양은 수강학년 제한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숙명여대의 경우 1학년이 먼저 수강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1학년생들의 수강비율이 매우 높다고 한다. 그룹D에서 1학년 2학기가 유독 많은 이유이다.

합계	60	25	21	55	161
----	----	----	----	----	-----

그룹A가 생각보다 헌법과목 수강과목 수가 적은 이유는 지금 개설된 과목이 1학년 2학기 전공필수 과목이라 대부분 헌법과목을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수강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법학분야에 관심있는 정책학과 학생들은 졸업시까지 대개 헌법과목을 2-3과목 정도는 수강하는 경우가 많다.¹⁶⁾ 그룹C의 사회교육과에서 헌법 전공과목은 1개만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교수님을 통해 파악되었는데 반해, 학생들은 다른 과목들을 들었다고 표시한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다른 법교육 과목에서 헌법 관련 내용을 일부 다룬 경우를 헌법과목이라 생각하였거나 혹은 학과 외부의 법학과 수업(대구대의 경우) 혹은 교양수업(서울대의 경우)을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¹⁷⁾

4. 현재 수강중인 헌법과목을 수강 신청하게 된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졸업을 위한 전공과목 이수	44	10	10	2	66
②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대비	11	11		4	26
③공무원시험 대비	2			5	7
④공기업 등 입사시험 대비				1	1
⑤사회과 교사 임용시험 대비			8		8
⑥시민으로서의 교양 함양	3	3	1	38	45
기타		1	2	4	7
무응답				1	1

16) 정책학과 학부에는 현재 헌법 전공과목으로 헌법과기본권, 헌법과국가, 헌법과공공정책 3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2021-1학기에는 IC-PBL 형태의 신규과목으로 정책연구캡스톤PBL(헌법과민주주의)이 개설되었다.

17) 예컨대 이수진 강사님은 사회와 법률이라는 과목에서도 헌법을 일부 다루게 되는데, 이를 헌법과목을 들은 것으로 적었을 수 있다고 보았고, 김수용 교수님도 수강생들이 다른 헌법수업을 듣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었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설문 3의 후속질문으로 만약 다른 헌법과목을 들었다면, 어느 학과에서 개설된 무슨 수업을 들었는지 수업명을 주관식으로 적도록 하였으면 사실이 더 명확히 밝혀졌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합계	60	25	21	55	161
----	----	----	----	----	-----

그룹A, B는 ①졸업을 위한 전공과목 이수와 ②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대비 목적이 그룹C, D에 비해서 현저히 높는데, 특히 그룹A 중에 행정학과를 제외하고 정책학과, 그리고 숙명여대 법학과 학생들은 양자 모두를 목적으로 삼는 학생들의 비율이 실질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¹⁸⁾ 그룹C의 경우에도 ①졸업을 위한 전공과목 이수 ⑤사회과 교사 임용시험 대비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하나에만 답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룹D는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아무래도 ⑥시민으로서의 교양 함양을 위한 목적이 압도적인 비율(38/55)을 차지했다.

5. 헌법과목을 수강 신청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 배우기를 기대하는 내용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헌정사, 헌법철학, 헌법사상 등	3	1		1	5
②헌법이론	10	1	4	9	24
③헌법판례	32	11	4	11	58
④헌법과 부속법령		1		4	5
⑤헌법재판		1		1	2
⑥외국과의 비교헌법	1				1
⑦정치/사회 현상에 대한 헌법학적 분석 및 평가	6	3	5	6	20
⑧전반적으로 고루	8	6	8	23	45
무응답		1			1
합계	60	25	21	55	161

그룹A, B는 헌법과목에서 헌법판례를 공부하려는 수요가 상당히 높은 반면, 그룹C, D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법

18) 이는 숙명여대 유은정, 정애령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었다.

학을 전공과목으로 배우는가, 또한 향후 법학 관련 진로를 생각하는가, 그리고 담당 교수들의 수업방식 등과 연결되는 요소로 생각된다.¹⁹⁾

2. 설문조사 6-15번 설문(헌법판례교육 현황과 수요)과 결과·분석

6번부터 15번까지의 설문은 헌법판례교육에 대한 구체적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1-5번은 각각 1개의 문항으로 구성한데 반해, 6-15번은 연관된 질문의 경우 6-1, 6-2와 같이 추가로 질문하였으므로, 실제 문항 수는 10개보다 5-6개 더 많은 15-16개였다.

6-1. 현재 수강중인 헌법과목에서 헌법재판소 결정(혹은 헌법적 판단을 포함한 법원 판결)은 3학점 수업 기준으로 1주에 몇 개나 다루어지고 있나요?(2시간 수업인 경우 3시간 수업으로 환산하여 답할 것)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다루지 않는다			1	2	3
②1-2개	7	8	13	26	54
③3-4개	13	9	4	22	48
④5-6개	13	7	1	3	24
⑤7개 이상	27	1		1	29
기타			1		1
무응답			1	1	2
합계	60	25	21	55	161

헌법재판소 결정을 양적으로 얼마나 다루고 있는가를 묻은 질문에 대해서, 그룹A, B가 상대적으로 그룹C, D에 비해서 더 많은 판례를 다루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법전문 진학 희망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헌법 전공과목들에서 판례에 대한 교육비중이 더 높으며, 반대로 교양으로 공부하거나 사회

19) 한양대 및 숙명여대 4분 교수님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정문식 교수님은 담당과목이 기본권 수업이기 때문에 판례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실제로 헌법 중에서도 정치제도나 국가조직 분야의 강좌는 판례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과 임용고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비중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그룹A, B 중에서는 그룹A에서 판례를 더 많이 다룬다고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 두 그룹의 교수님들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한, 한양대 수업은 기본권 수업이므로 판례를 많이 다루게 되는 수업이라는 점, 숙명여대 미디어법의 경우 헌법심화과목이고 판례 외에도 언론관련 다른 쟁점들도 다루기 때문에 차이가 난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²¹⁾ 그룹C, D 중에서 교양과목인 그룹D가 판례를 더 많이 다루는 모습은 특기할만 한데, 이는 한양대 교양 헌법이 헌법실무자 출신의 두 분 교수님의 옴니버스 강좌로서 판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²²⁾

6-2. 현재 수강중인 헌법과목에서 헌법재판소 결정(혹은 헌법적 판단을 포함한 법원 판결)은 3학점 수업 기준으로 1주에 몇 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2시간 수업인 경우 3시간 수업으로 환산하여 답할 것)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②1-2개	9	11	12	31	63
③3-4개	20	10	4	17	51
④5-6개	12	3	1	6	22
⑤7개 이상	19	1	2	1	23
기타			1		1
무응답			1		1

20) 김수용 교수님은 판례의 비중을 비교적 높게 두지만, 사회과 임용시험에서의 비중이 높지 않고 수업시간의 한계가 있기에 생각보다 헌법판례를 많이 다룰 수 없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수진 강사님은 3시간 수업 중에 2시간은 강의를 하며 이 때 판례를 2-3개 정도 다루고, 1시간은 학생들에게 조를 짜서 현재결정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한다고 하여 실질로는 꽤 높은 비중을 보였다.

21) 필자와 정문식 교수님은 7개 이상, 숙명여대 헌법소송법은 5-6개, 미디어법은 3-4개 정도로 말씀하셨다.

22) 한양대 교양에서 정광현 교수님은 5-6개 정도 하는 것 같다고 한 데 반해, 숙명여대 정애령 교수님은 1-2개 정도를 다루는 것 같다고 하였다. 정애령 교수님은 교양과목 사랑과 헌법은 헌법을 기초로 출발하지만 민법, 형법 혹은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므로 현재판례의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다고 언급하였다.

합계	60	25	21	55	161
----	----	----	----	----	-----

학생들이 수업에서 다뤄진다고 인식한 현재 결정의 숫자에 비해서(6-1), 학생들이 수업에서 다루길 원하는 결정의 숫자는 더 적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6-2, 그룹A, B C, D 모두 그러함). 이는 아래 다른 문항들의 답변을 통해 보면 헌법 판례의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공부 양이나 부담의 측면에서 어렵다고 인식한 탓으로 추정된다.

7-1. 현재 수강중인 헌법과목에서 헌법판례를 보통 어느 범위까지 배우고 있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핵심쟁점과 결론 위주	16	4	8	19	47
②판결요지 소개	5	1	3	8	17
③판례 본문 중 법정의견 소개	4	3	3	4	14
④판례 본문 중 법정의견 + 별개의견, 반대의견 소개	11	6	1	8	26
⑤판례 본문(법정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 분석 및 평가	23	10	4	14	51
기타	1	1	1		3
무응답			1	2	3
합계	60	25	21	55	161

그룹A, B와 그룹C, D는 헌법판례를 배우는 범위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자는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배우고(⑤판례 본문(법정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 분석 및 평가) 후자 그룹은 상대적으로는 간략하게 배우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룹D가 C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배우는 비율이 높은 것은, 한양대 교양 과목에서는 판례세미나 형식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다만 이 문항에서 실제와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같은 수업에서도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판례는 자세하게, 덜 중요한 판례는 간략하게 결론이나 요지 위주로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인데(혹은 결론

만 얘기하면서 분석·평가를 자세하게 한다든가 하는 또 다른 조합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배우고 있는지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구분하였다.²³⁾

교수들의 인식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룹A의 정문식 교수님은 주로 ①핵심쟁점과 결론 위주로,²⁴⁾ 필자는 ⑤판례 본문(법정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 분석 및 평가 위주로, 그룹B의 유은정, 정애령 교수님은 각각 ③판례 본문 중 법정의견 소개 또는 ④판례 본문 중 법정의견 + 별개의견, 반대의견 소개 정도라고 밝혔고, 그룹C의 김수용 교수님은 판례를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임용시험 준비와 수업시간의 제약상 마음껏 자세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견해를, 그룹D에서 정애령 교수님은 ①핵심쟁점과 결론 위주 또는 ②판결요지 소개 정도로, 한양대 교양은 전반부 정광현 교수님은 ②판결요지 소개 중심으로, 후반부 서기석 석좌교수님은 ⑤판례 본문(법정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 분석 및 평가 중심으로 파악된다.

7-2. 현재 수강중인 헌법과목에서 헌법판례를 어느 범위까지 배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 D	합계
①핵심쟁점과 결론 위주	12	3	4	17	36
②판결요지 소개	6	1		8	15
③판례 본문 중 법정의견 소개	8	1	1	3	13
④판례 본문 중 법정의견 + 별개의견, 반대의견 소개	12	7	3	10	32
⑤판례 본문(법정의견, 별개의견, 반대	22	13	11	17	63

23) 함현호 교수님은 학생들이 법정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등의 용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겠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전공과목 수강생들은 대부분 알고 답하였으리라 추정되지만 교양과목 일부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설문에서 생소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간략한 개념설명을 부기하였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

24) 정문식 교수님은 행정학과의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고시나 공무원시험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를 진행한다고 하였다. 이는 뒤의 평가형태 설문에서도 연계되는 지점이다.

의견) + 분석 및 평가					
기타			1		1
무응답			1		1
합계	60	25	21	55	161

학생들의 헌법판례 공부범위에 대한 기대수준도 대체로 그룹A, B가 그룹C, D에 비해서 자세히 배우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는 것에 비해 자세히 배우고자 하는 기대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유독 그룹C에서 판례를 자세하게 배우고자 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은 특기할만하다.²⁵⁾

8-1. 학부 교육 전체적인 측면에서 헌법과목에서의 헌법판례 교육의 비중이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그렇다	14	7	6	9	36
②그렇지 않다	2			1	3
③지금 정도가 적당하다	26	8	6	27	67
④과목 성격에 따라 다르다	18	10	8	18	54
무응답			1		1
합계	60	25	21	55	161

8-1 헌법판례 교육의 비중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그룹A, B, C에서는 약 25% 내외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반면(그룹A는 대부분 1학년 2학기를 다니는 저학년생임을 고려하면 다소 적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있다), 그룹D는 상대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낮았다(9/55).

25) 이수진 강사님은 학생들이 매 수업시간에 조를 짜서 판례에 대해 찬반이나 위헌/합헌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유사판례나 관련 자료 등을 찾아본다고 하였는데, 이런 조별 발표의 경험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8-1.에서 ①을 택한 경우) 8-2. 헌법판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면 어떤 형태로
 늘어야 한다고 보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법학전공분야에서 헌법판례 다루는 전공과목(예: 헌법사례연구) 추가 개설	7	6	3	2	18
②비법학분야에서 헌법판례 다루는 전공과목(예: 표현의 자유 판례연구) 추가 개설	1	1	2	4	8
③헌법 관련 교양과목 추가 개설	4	2	2	8	16
④기존 수업 내 이론강의 비율 축소 와 판례교육 확대	3			3	6
무응답	45	16	14	38	113
합계	60	25	21	55	161

(8-1.에서 ②를 택한 경우) 8-3. 헌법판례 교육이 약화되어야 한다면 어떤 형태로
 줄어야 한다고 보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헌법 전공과목 축소 또는 폐지				1	1
②헌법 관련 교양과목 축소 또는 폐지		1			1
③기존 수업 내 판례교육 비율 축소	2	1	1	4	8
무응답	58	23	20	50	151
합계	60	25	21	55	161

8-2를 보면, 그룹A, B는 전공과목 확대의 형태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했고, 그룹C, D는 교양과목 확대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의 수강 편의와 접근성에 따른 구분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리고 8-3을 보면, 헌법판례 교육이 약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중에서는 ③기존 수업 내 판례교육 비율 축소를 선호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는 학생들 중 일부는 판례를 어렵게 인식하거나 아니면 판례보다는 기초개념을 더 중점적으로 배우길 원하는 경우가 있음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9-1. 현재 수강중인 헌법과목에서 제시되는 헌법판례를 공부할 때 주로 어떤 자료를 참고하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교강사 강의안	28	18	10	43	99
②헌법 교과서 또는 입문서	14	2	1	1	18
③별도의 판례 교재	3			1	4
④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사이트	15	4	7	4	30
⑤네이버, 구글 등 포털 검색		1	1	6	8
기타			1		1
무응답			1		1
합계	60	25	21	55	161

헌법판례공부의 주요 레퍼런스로는 그룹에 관계없이 모두 교강사 강의안을 가장 많이 참고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그룹D가 압도적인 비율로 교강사 강의안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교양과목의 특성상 별도의 교재나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기보다는 해당 수업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룹D가 교양수업이므로 교재를 지정하는데 부담을 느껴 강의안만 제공하지만 대신에 충실한 강의자료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²⁶⁾

교강사 강의안 다음으로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그룹A에서 교과서 활용 비중이 유독 높은 것은 정문식 교수님이 교과서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그룹B에서 유은정 교수님은 교재를 지정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를 강의안으로 인식한 것인지 다소간 통계의 혼동이 보인다.

26) 그룹A 정문식 교수님은 교재와 강의안을 동시에 제공하고, 필자는 강의안 만을, 그룹B의 유은정 교수님은 교재로 헌법재판실무제요를 지정하고 강의안 제공, 정애령 교수님은 강의안만, 그룹C의 이수진 강사님은 교재와 강의안을 동시에 제공하고, 그룹D는 정광현, 정애령 교수님 두 분 다 강의안만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9-1 설문구성에 있어서, 수업에서 특정 교재를 지정하지만 교강사 강의안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①교강사 강의안 ②헌법 교과서 또는 입문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9-2. 다음 중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헌법판례를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교강사 강의안	19	11	8	26	64
②헌법 교과서 또는 입문서	17	3	2	3	25
③별도의 판례 교재	11	1	3	2	17
④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사이트	8	8	6	8	30
⑤네이버, 구글 등 포털 검색	1	2		4	7
⑥유튜브 등 시청각자료	4		1	11	16
기타				1	1
무응답			1		1
합계	60	25	21	55	161

9-1과 비교해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레퍼런스로 가장 높은 비율의 상승폭을 보인 것은 그룹A에서는 ③별도의 판례 교재, 그룹B에서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사이트, 그룹C는 별도의 판례 교재, 그룹D는 ⑥유튜브 등 시청각자료로 각각 편차를 보인다.

별도의 판례 교재에 대한 희망이 증가한 부분은, 기존의 교과서나 강의안만으로 판례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충분치 않았고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고 싶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룹D는 유튜브 등 시청각자료와 포털 검색 및 헌재 사이트에 대한 선호가 골고루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교양과목 수강생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터넷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10. 수업에서 제시되는 헌법판례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법학 전반에 대한 공부와 이해의 부족	24	5	7	29	65
②헌법 전반에 대한 공부와 이해의	20	7	7	12	46

부족					
③헌법소송법에 대한 공부와 이해의 부족	1	2	2	2	7
④중요판례 외에 덜 중요하고 지엽적인 판례까지 과도한 공부 분량	4	4		1	9
⑤헌재판례의 불친절하고 난잡한 용어와 문장	7	7	2	10	26
⑥교강사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해서			2		2
기타	4				4
무응답			1	1	2
합계	60	25	21	55	161

헌법판례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그룹A, C, D는 법학과 헌법 전반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그룹B는 법학 전공자들이고 비교적 고학년 수강자들이어서 상대적으로 이 사유는 적게 응답했다. 반면에 그룹B는 헌재판례의 불친절하고 난잡한 용어와 문장, 중요판례 외에 덜 중요하고 지엽적인 판례까지 과도한 공부 분량에 대한 비율이 법학과 헌법 공부의 부족과 비슷한 수준의 양상을 보였다. 그룹D도 ⑤헌재판례의 불친절하고 난잡한 용어와 문장을 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10/55), 그룹A도 그러함을 보면(7/60), 법률문장을 순화함과 동시에 이해도를 높이는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11. 헌법판례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네이버, 유튜브 등 검색으로 해결한다	23	6	10	39	78
②교과서 관련 부분을 찾아본다	18	9	1	1	29
③학원교재의 관련 부분을 찾아본다	3		2		5
④관련 논문이나 판례평석을 찾아본다	5	4	3	4	16
⑤교강사에게 질문한다	6	1	3	4	14
⑥친구나 선배에게 질문한다	3	2	1	1	7

⑦모른 채로 넘어간다	2	3		4	9
기타				1	1
무응답			1	1	2
합계	60	25	21	55	161

설문 11은 나중에 보니 설문 9-2와 다소 중복적인 느낌도 있었는데, 차이를 들자면 설문 11의 경우는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질문 등 더 포괄적인 방법을 물어본 점이다. 그리고 9-2는 판례를 1차적으로 찾아서 읽는 자료의 성격으로 이해했을 것 같고, 11은 의문이 있을 경우 해결책을 찾는 방안으로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9-2에서 교강사 강의안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데 비해서, 11에서는 그룹A, B, C, D 모두에서 ①네이버, 유튜브 등 검색으로 해결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그룹D는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검색에 의존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교양수업의 경우 전문자료보다는 검색에의 의존도가 월등히 높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룹A, B는 그룹C, D에 비해서 ②교과서 관련 부분을 찾아본다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점도 주목할 수 있다.²⁷⁾

12-1. 귀하는 헌법판례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헌법과목 수업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단, 코로나라는 지금의 특수 상황을 전제하지 말고,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할 것)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온라인 녹화강의(대형)	18	9	3	8	38
②온라인 실시간화상강의(대형)			2	2	4
③온라인 토론식 수업(소규모)	2	1	3	7	13
④오프라인 강의(대형)	18	4	3	21	46
⑤오프라인 토론식 수업(소규모)	17	11	3	14	45
⑥플립러닝(Flipped Learning)(대형)	5		5	3	13

27) 기타 응답 중에 ‘인강’을 적은 학생이 있었는데, 실제로 과거 학생들과의 대화 중 인강을 듣는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었고, 그런 수요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는 소규모)					
기타*			1		1
무응답			1		1
합계	60	25	21	55	161

그룹A, B, C, D 모두 오프라인 수업(④오프라인 강의(대형) ⑤오프라인 토론식 수업(소규모)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기는 했으나(그룹D가 가장 높은 오프라인 선호를 보임. 35/55), ①온라인 녹화강의(대형)에 대한 선호도 무시 못할 수준이어서(특히 그룹A, B가 더욱 그러함), 코로나 시대의 계속이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적응도를 높였다고 보인다. 그룹C는 조사결과 상당히 다채로운 부챗살 모양의 분포를 보였고, 오늘날 새로운 교육방법론으로 각광 받고 있는 ⑥플립러닝(Flipped Learning)에 대한 비율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서,²⁸⁾ 교육방법론에 대한 학습도와 이해도가 높은 사회교육과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²⁹⁾

실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교수자에게 확인한 결과 그룹A의 필자와 정문식 교수는 온라인 녹화강의를, 그룹B의 유은정 교수는 온라인 녹화 + 온라인 토론식 수업을 병행하였고, 정애령 교수는 온라인 녹화강의, 그룹D의 정애령 교수는 온라인 녹화강의, 정광현/서기석 음니버스 강의는 전반부 정광현 교수는 녹화강의, 후반부 서기석 석좌교수는 온라인으로 판례세미나를 하고 있었다(그룹 C의 이수진 강사도 2020-1학기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녹화강의를 하였다고 한다). 이들 중에서 정문식, 유은정, 정애령 교수님 모두 ⑤오프라인 토론식 수업(소규모)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정광현 교수님은 ④오프라인 강의(대형) + ⑤오프라인 토론식 수업(소규모)를 접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적 범위에서 문답식 방법론을 가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³⁰⁾

28) 사회과 법교육에서의 플립러닝에 대해서는, 광한영,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기법을 활용한 법교육 수업모델 연구 - 대학 학부 헌법 수업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11(1), 2016.4; 송성민,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본질에 입각한 비판적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2019.3 참조.

29) 이수진 강사님도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30) 설문 작성시에는 생각을 못했고, 지금 우리 법(학)교육 현실에서 여러 이유에서 거

12-2. 귀하가 위 12-1.에서 선택한 수업형태가 헌법판례교육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근거를 들어 서술해 주세요.

12-1 응답	서술답변
① 온라인 녹화 강의	<p>개인적으로 스스로 화상강의가 훨씬 집중이 잘되는 경향이 있으며 교수님들도 확실히 실시간보다는 녹화강의일 때 말 정리를 더 잘 해주시는 것 같다. 그리고 헌법수업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좋고, 법학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도 그나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므로 소규모보다는 대형강의가 바람직 한 것 같다.</p> <p>녹화강의를 통해 먼저 강의(판례)의 핵심사항과 쟁점에 대해 이해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한 부분은 잠시 강의를 멈추거나 강의가 끝난 후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녹화강의 + 인터넷 활용이 헌법판례교육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p>
② 온라인 실시간	<p>비전공자에게는 헌법관련 주제가 생소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하는 토론식 수업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온라인으로서 적절한 시청각자료로 흥미와 이해를 키우는 식으로 하는게 효과적일 것 이라고 생각된다.</p> <p>실시간 화상강의 시간을 통해 그날 강의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 바로 해결할 수 있고, 교수님과 학생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p>
③ 온라인 토론	<p>학생-교수자 간 의견 나누기가 용이하고, 이해가 어려운 것도 답을 받기가 빠를 것이다. 또한 소규모인 만큼 연대감도 끈끈해져 공부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p>
④ 오프라	<p>1) <교양과목>으로 듣는 이상, 토론등을 통해 좁은 범위를 깊게 공부한 다기보단 <강의를 통해 헌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관심유발을</p>

의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소크라테스식(문답식) 교수법도 답항의 하나로 추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권영준, “로스쿨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단상(斷想)”, 법교육연구 11(3), 2016.12, 24-26면; 하재홍, “소크라테스식(문답식) 교수법”, 법학논집 14(4), 2010.6 참조. 미국 로스쿨의 법학교육 방법론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식(문답식) 교수법은 오늘날은 미국 로스쿨에서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않으나, 필자가 미국 로스쿨 수업을 청강할 때도 강의 등 다른 교수방법과 일정 부분 접목하여 시행하는 모습을 경험한 바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고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또한 오늘날 부각되는 소위 문제중심교육(PBL)도 헌법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도 이번 학기에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처음으로 문제중심교육(PBL)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 대 형	<p>우선시> 하는게 보다 나올것으로 보이는 점, 2)효과적인학습에있어<플립러닝이가장이상적이라고생각>되지만,한학기를 기준으로강의가진행되기에헌법에대한상당한이해와지식수준이전제되는적극적인<토론이시간적한계로인해어려울것>으로보이는점, 3)강의수강을방해하는요소들이비교적많은온라인강의에비해오프라인강의는그렇지않은점</p>
	<p>많은 학생들이 수강해야 하며 법의 경우 토론과 같은 의견 교환 보단 개념이해 위주기 때문에 오프라인 대형강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p>
	<p>온라인은 반복해서 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프라인 수업은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보다 생생한 수업을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례교육의 경우 토론식 수업보다는 다양한 판례를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대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p>
⑤ 오 프 라 토 론	<p>헌법이라는 소재 자체가 다소 어렵고 난해한 편이므로 교강사가 실시간으로 학생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p>
	<p>대규모 청중을 대상으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1)번 또는 (3)번 형태의 수업방식은 대개 헌법판례를 단지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만 가볍게 배우고 넘어갈 것인데, 이는 대학이 아니라 학원가에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강의에서나 다를 법한 수업 방식이다. 대학에서 진행되는 헌법판례교육은 실용성보다는 학문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현재결정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기 위한 안목배양을 위해 가장 적절한 수업방식은 (5)번과 같은 소규모 청중을 대상으로 수업이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p>
	<p>우선 어떤 방식이 됐건 오프라인 수업이 온라인 수업보다 학습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교강사와의 상호작용도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고 강의에 대한 집중력이 달라진다. 또한 대형 강의보다는 오프라인 토론식 수업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앞서 언급한 교강사와의 상호작용과 집중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판례 교육의 특성상 기본적인 헌법 개념과 판례의 논리를 교육받은 다음 법정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중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한다면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p> <p>토론을 위해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수업시간에 토론을 하면서 같은 판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p>

	<p>판례라는 것은 기본적인 이론 학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판례가 나오게 된 근거를 분석하고, 어떤 맹점, 쟁점, 주제 등이 드러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에는 단순히 판례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는 수업밖에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판례들 자체를 중점적으로 깊게 파고들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
	<p>판례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 및 의견을 듣는 것도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지만, 학생이 직접 그에 대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원리와 적용이 학습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 후 교수님께서 정리해주는 식으로 평가 및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더 큰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헌법의 경우, 다른 판례에 비해 토론형으로 논의될 수 있는 쟁점들이 많은 편이다. 이를 교사, 강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수업형보다 학생들 간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고 이야기하는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면 헌법, 헌법재판, 그 판례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p>
	<p>헌법재판소 판례의 경우 그 판례를 읽는 사람들의 견해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무조건 '정답'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업에서 기본권을 다룰 때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읽고 그 판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후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한다면 훨씬 더 헌법판례교육이 비판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상 '하브루타식교육'도 좋습니다. 단순히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헌법판례에 대해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수정하고 서로의 생각을 보완한 후 토론수업을 진행한다면 저는 그보다 질높은 수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p>
<p>⑥ 플러닝</p>	<p>미리 학습을 한 상태에서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는 것(토론)이 여러 의견 공유가 가능하고, 향후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매우 의미있게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해 여러 조항을 찾아 볼 수 있는 점이 수업 진행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p>
	<p>법 특성상 일반인이 판례를 보고 즉각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운 단어와 유기적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를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판례를 공부하여 나름의 해석을 하고 이를 강사의 해석과 비교하여 맞춰가는 방식이 가장 헌법판례교육에 적합하다 판단됩니다.</p>

위 주관식 답변은 대표적인 답변 일부만 추려본 것이다. 대략의 경향을 보면, ①온라인 녹화강의(대형)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반복학습 가능과 멈춰가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요인이었고, ④오프라인 대형 ⑤오프라인 토론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집중도가 더 높고 전달과 피드백이 잘 될 수 있다는 요인을 꼽았다. 위 답변들만 보더라도 미래 헌법판례교육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13-1. 헌법과목에서 헌법판례를 가장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객관식, 단답형, OX	21	6		22	49
②주관식 사례형	22	7	9	10	48
③주관식 논술형	12	3	7	12	34
④소논문 또는 보고서 작성	2	9	3	8	22
⑤집단 토론 ³¹⁾				3	3
기타*	2		1		3
무응답	1		1		2
합계	60	25	21	55	161

그룹A, B, C, D 전반적으로 ②주관식 사례형 또는 ③주관식 논술형을 뽑은 비율이 높았지만, 그룹A는 ①객관식, 단답형, OX의 비중도 상당히 높았고, B는 ④소논문 또는 보고서 작성의 비율도 높았으며, D는 ①객관식, 단답형, OX의 비중도 상당히 높았다.

위 학생들의 설문결과는 당해 수업에서 실제로 어떤 시험형태를 택하고 있는가와 연계성이 높아 보인다. 그룹A에서 필자는 ②주관식 사례형 또는 ③주관식 논술형을, 정문식 교수는 ①객관식, 단답형, OX를,³²⁾ 그룹B에서 유은정

31) ⑤는 ‘발표 및 토론’으로 하든지 아니면 문항을 더 세분하여 집단 토론과 소그룹별 토론을 나누는 식으로 하면 더 정확한 선지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다만 이 문항을 택한 경우는 극소수여서 설문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 요소는 아니라고 보인다.

32) 정문식 교수님은 행정고시나 공무원시험을 고려하여 이런 형태의 시험을 보지만,

교수는 ②주관식 사례형과 ④소논문 또는 보고서 작성을, 정애령 교수는 ④소논문 또는 보고서 작성을, 그룹C의 김수용 교수는 ③주관식 논술형을, 이수진 강사는 단답형과 주관식을 섞어서 본다고 하였고, 그룹D에서 정애령 교수는 ④소논문 또는 보고서 작성과 함께 2회의 온라인 퀴즈를 본다고 하였으며, 정광현 교수는 ①객관식, 단답형, OX와 ②주관식 사례형을 함께 평가한다고 밝혔다.³³⁾

13-2. 13-1.의 시험형태를 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고, 수업을 통해 객관식 헌법시험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다	23	6	4	20	53
②헌법 서술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이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2	5	1	7	35
③헌법을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10	9	11	36
④다양성을 존중토록 하고 비판의식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7	3	5	12	27
기타*			1	2	3
무응답	2	1	1	3	7
합계	60	25	21	55	161

설문 13-2는 13-1의 답항에 대체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연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구성해 본 것인데,³⁴⁾ 그룹A, B는 대체적으로 필자가 생각한 바와 같이 연동이 되었다고 보이나, 그룹C, D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답안 분포를

교양 수업이었다면 오히려 주관식 사례형을 택했을 것 같다고 밝혔다.

33) 정광현 교수님은 현재 정책학과 헌법과기본권 수업 분반도 필자 및 정문식 교수와 나누어 맡고 있는데, 헌법과기본권 수업 학생들은 법전문 진학 비율이 높으므로 주관식 사례형으로 내고 있다고 하였다.

34) 물론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단선적으로 연결되는 것만은 아님은 물론이다.

보였다. 그룹C, D는 상대적으로 ④를 많이 택해서 그룹A, B보다 시민교육에 더 의의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13-1	13-2
①객관식, 단답형, OX	①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고, 수업을 통해 객관식 헌법시험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다
②주관식 사례형	②헌법 서술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이후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③주관식 논술형	
④소논문 또는 보고서 작성	③헌법을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⑤집단 토론	④다양성을 존중토록 하고 비판의식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14. 헌법과 법학 전공과목 외에, 헌법판례를 다음 중 어떤 학문 분과 수업에서 활용하면 가장 높은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정치(외교)학	20	4		14	38
②행정학	17	4	2	8	31
③철학(법철학, 정치철학 등)	17	8	5	5	35
④사회교육학	1	1	5	2	9
⑤사회학	1	4	4	14	23
⑥언론학			3	2	5
⑦말하기 또는 글쓰기 교양과목	1	1		8	10
⑧특별히 없다	3	3		2	8
기타			1		1
무응답			1		1
합계	60	25	21	55	161

설문 14는 헌법판례가 융합교육이나 시민교육의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묻은 것인데, ①정치(외교)학 ③철학(법철학, 정치철학 등) ②행

정학 ⑤사회학 ⑦말하기 또는 글쓰기 교양과목의 순으로 높은 응답을 얻었다. 그룹A에서 이들 과목이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정치학, 철학, 행정학을 전공과목으로 함께 배우는 PPEL 교육과정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룹D에서는 ①정치(외교)학과 함께 ⑤사회학 ⑦말하기 또는 글쓰기 교양과목이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이 눈에 띈다(특히 교양의 비중이 다른 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사회교육학이 생각보다 저조한 부분은 다른 학생들이 사회교육학과의 교육과정에 어둡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되며, 상대적으로 사회교육과 학생들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5/21). 또한 대구대 사회교육과 학생들의 15. 주관식에 대한 답을 보면, 법학과목과 헌법판례사례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경향성을 알 수 있었다(7건).³⁵⁾

15. 이상의 설문 외에 학부에서의 헌법판례교육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수정·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 혹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식 답안-생략)³⁶⁾

IV.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 법(학)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목표 재정립과 융합교육·시민교육 강화

1. 서설: 설문조사(III)에 나타난 헌법판례교육 현황과 학부생 수요

필자가 설문조사를 통해 실태를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학부에서의 헌법교육과 헌법판례교육은 법전원 체제의 도입 이전, 그리고 소위 지능정보화 사회의 도래 이전의 단일한 모습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와 변용의 모습들을

-
- 35) 교수님들께도 설문 14에 대한 질문을 드렸으나,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특별히 수렴되는 부분은 없었다.
 - 36) 객관식 설문만으로 미처 담지 못한 쟁점이 있을까 하여 추가하였으나, 특별히 주목할 만한 답변이 제시되지는 않아서 이에 대한 소개는 생략한다. 다만 수업을 통해 학생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 이것을 일종의 강의평가와 혼동하거나 혹은 그러한 기회로 생각하여 평소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극소수 있었으나, 크게 의미를 둘만한 비중은 전혀 아니었다.

보여준다.

과거에는 전국의 수많은 법과대학들이 사법시험 대비라는 단일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그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³⁷⁾ 다만 실무와 구분되는 이론연구자를 양성하는데 일부의 자원이 할애되었을 뿐이었다. 전국의 수많은 대학들에 법과대학이 별도로 설치되고 정원도 많은 편이어서, 법(학)교육을 자족적으로 시행하기에 크게 부족함이 없었고, 여기에 대학 내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자원이 자연스럽게 집중되는 형태였다. 그러나 사법시험 폐지와 법전원 체제의 도입, 그리고 법전원 도입 대학에서의 학부 법학과 폐지조항 등은 과거 단일했던 법학교육의 모습을 여러 형태로 분화시켰고, 이제 법(학)교육은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에 맞서 생존을 위해 각자도생에 열중할 수밖에 없는 개별화·다양화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의 설문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의식하여 구성한 것이고, 또 조사결과도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설문에 응한 학생이 161명에 한정되기는 하나, 8개 수업 수강생 범위가 이공계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분야가 망라된다는 것은, 그만큼 헌법과목에 대한 학부의 수요가 넓다는 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설문2). 또한 수강 목적에 있어서도 전공과목 이수나 법전원 대비 등 실용적 목적 외에도 시민으로서의 교양 함양에 응한 인원이 적지 않다는 점(설문 4, 45/161) 또한 이러한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헌법판례를 배우는 범위도 그룹 구분과 무관하게 현재판례의 다양한 내용과 더불어 분석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배우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한 결과를 보면(설문 7-1, 7-2), 이제 과거의 판례 결론이나 요지 전달 위주의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심층 분석과 토론으로 진화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런 기조는 만약 법전원 및 변호사시험에서의 평가방식이 바뀌고, 또한 공무원 시험 등의 형태가 바뀌게 된다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³⁸⁾ 현재 학부 법(학) 교육에서의 수업형

37)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를 1명이라도 배출한 법학과는 반도 채 안되었는데도 전체 법학과의 커리큘럼은 사법시험과목 일변도였음을 지적하며, 이제 로스쿨이 아닌 학부 법학과의 법학교육은 기존의 사법시험을 염두에 둔 법학교육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성낙인, “헌법학 연구와 교육 방법론 연구,” 동아법학 제54호, 2012, 69-70면)는 과거 법대 체제의 허구적(fiction) 측면의 일부를 나타낸다.

38) 앞의 설문조사 부분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진학, 취직에서 요구하는 바에 반응

태나 평가형태도 아직 대형 강의식 수업의 비중이 높고 객관식 등의 평가 비중도 적지 않으며 학생도 어느 정도 이들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 또한 진학이나 취직 등에서의 유용성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지금의 법조 생태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고찰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³⁹⁾

2. 법전원 도입과 인공지능 시대 도래의 이중 파고를 넘어서

1) 법전원 도입 이후 학부 법(학)교육 부실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필요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도 논의할 것이 많지만, 법전원 도입 이후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등 법조 거버넌스 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중앙과 상부로 끊임없이 집중되는 ‘소용돌이의 한국문화’를 고려하면, 단순히 학부 교육의 문제만을 단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고, 법(학)교육 먹이사슬의 최상부에 위치한 법전원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학부 헌법교육의 난맥상을 해결하는데도 중요성과 시급성을 가진다.

우선, ① 현재의 법전원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1) 가장 비판받는 인가주의, 정원 제한, 낮은 합격률 유지, 변호사시험 방식 등에서만 소폭 변화를 주면서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2) 학부 법과대학 혹은 법학과를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법학과 법이론 교육을 주로 담당하도록 하고, 법전원에서는 과거 사법연수원과 유사한 수준의 실무 및 심화된 전문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강사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하여 수업이나 시험형태 등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39) 단, 본 설문조사의 한계적인 부분은, 가령 4개 대학 8개 과목은 나름대로는 숙고하여 선정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부담의 성격이 있는 터라 필자와의 개인적 인연이 있는 분들 위주로 섭외하게 되었고, 또 전체 표본을 보자면 대학만도 수십 개 대학 이상, 헌법과목도 수백 개 이상이 있는데 필자의 구분에 부합하는 4개 대학 8개 과목의 선정 만으로 전체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반문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수업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라는 팬데믹의 혼란기에 이루어진 점(6과목은 2020-2학기, 2과목은 2020-1학기)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개별성, 특수성의 요소들이 있다면 최대한 이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여 이를 보정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럼에도 좀 더 큰 표본에 대해서 본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조사를 확대시행해보는 것도 대표성을 보강하는 방법일 수는 있겠다.

주로 담당하도록 대폭 변화를 줄 것인가, 혹은 ② 법전문 체제를 폐지하고 종전처럼 학부교육과 사법시험 체제로 복귀하거나⁴⁰⁾ 아니면 ③ 학부 로스쿨 도입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필자는 위 선택지 중에서 ①의 (2)와 같은 방식의 변화도 규범적·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처럼 법전문 설치대학은 학부에 법학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⁴¹⁾ 비록 입법 당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성격이 있었겠으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위헌적이므로 해당 입법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대학원 과정에 법전문을 설치했다고 해서 학부에 법학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⁴²⁾ 각 대학의 판단 하에 법학 학사학위과정이 필요하면 둘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대학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전문 설치대학이 학부에 법과대학 혹은 법학과를 두는 경우에는, 기초이론 법학의 전진기지로 삼고, 이들 중에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고, 이들이 장차 학부 및 일반대학원의 법(학)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법학법이론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의 자유에 기반한 법이론 전문가 집단의 확보는, 법실무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대학을 포함한 시민사회 차원에서 정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거버넌스를 실현

40) 사법시험 제도입 등이 꾸준히 거론되어 왔으나, 그것은 지금에 와서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또한 과거 사법시험의 폐해 또한 적지 않았기에 사법시험 부활이 법(학)교육 위기의 확실한 해결책인지도 단언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도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연이어 선고하였고(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헌재 2018. 2. 22. 2016헌마713등; 헌재 2020. 10. 29. 2017헌마1128),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선고해왔다(헌재 2016. 9. 29. 2012헌마1002등; 헌재 2017. 12. 28. 2016헌마1152등; 헌재 2020. 10. 29. 2017헌마1128).

4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42) 굳이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려면, 학부와 법전문에서 양적, 질적으로 동일하고 중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비해서 사회적 자원이 과도하게 소모된다는 가정이 충족되는 한에서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안이 아닐까 한다.

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들 중 다수는 졸업 후 법전원에 진학하여 실무로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는 반드시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적되어온 법전원의 단기 교육연한으로 인한 법적 소양과 전문성 부족의 우려를 씻을 수 있는 대안의 측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⁴³⁾ 개인적으로는 규범적·제도적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제 설치여부와 설치형태, 정원규모 등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경우 과거 사법시험체제의 학부 법학교육이 가졌던 단점을 고려해 일정 정도의 변화는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과거와 같이 법학과가 모든 분야를 백화점식으로 대규모로 운영하는 것은 지양하고, 법전원과 교육과정과 내용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중소규모의 기초·이론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또 반드시 법전원 진학 등 사법실무자만을 지향하는 과정이 아니므로 시민교육은 물론 시민사회와 다른 전문법학분야에 소용되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근원적 제도개혁도 충분히 가능하고 타당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변화와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지금의 법전원 체제 및 학부 설립금지가 모두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학부 헌법 및 헌법판례 교육의 뉴노멀에 대한 플랜B도 필요하다.

2)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학부 법(학)교육의 전환 모색

지금 단기적으로는 2009년 법전원 체제의 도입이 법(학)교육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가장 큰 충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학생수급의 양적 차원의 문제, 그리고 소위 제4차 산업혁명 혹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라는 질적 차원의 문제는 앞으로 법(학)교육에 있어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43) 유사한 견해로, 박찬운, “영국 법학교육의 현실과 그것이 한국 로스쿨 교육에 주는 함의”, 저스티스 159, 2017.4 참조. 법전원의 단기 교육연한으로 인해 법전원의 교육기간을 늘리자는 주장들도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학부 법학과를 설치가능토록 하고 이를 졸업한 학생의 법전원 이수연한이나 이수과목 수 등에서 차등을 두도록 하거나, 학부에서 법학과목을 일정 시수 이상 이수한 자에게 법전원 응시자격을 주거나 진학 시 일부 과목 학점취득을 인정하는 등의 방안이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후자의 요소들은 헌법교육 및 헌법판례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라는 차원에서 각 대학들은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고, 또한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은 각 대학이 AI나 데이터 과학 등 전형적으로 이공계의 학문분과로 분류되는 영역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므로, 학부의 학과나 정원 단위에서 법학 분야가 과거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 헌법교육을 포함한 법(학)교육 일반은 과거처럼 자족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쌓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융합교육을 통한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제고라는 시대적 조류에 동참하면서,⁴⁴⁾ AI나 생명과학 등 과학기술 분야와의 연계나 융합 등에까지 선제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법학을 전공 교육으로만 한정하거나 법해석학과 사법전문가 양성이 법학교육의 전부라는 과거의 도그마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제 법학은 일반 교양교육을 포함한 시민교육의 측면과, 사법전문가가 아니라도 입법이나 기업분야 등 다방면의 법전문가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헌법학은 학부 법(학)교육의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데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헌법은 그 자체로 국가가 다루는 중요한 사항들을 망라한다는 점에서 이미 융합적이다. 헌법판례는 그것이 현재결정이든 혹은 대법원의 헌법판단이든 간에 국가·사회적 갈등을 통합하고 해결하는 과정과 내용을 통해 융합교육과 시민교육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소재이다.

오늘날 헌법과 헌법판례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지능정보화 사회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힘입은 바 크다. 지난 2017년의 대통령 탄핵결정을 예로 들어보면, 2016년 말 일부 시민들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연인원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을 대거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게 한 것은, 정권에 불리한 정보라도 통제되기 어렵고 노출될 수 있는 언론환경의 다양성과, 이것이 포털과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여론환경의 변화에 기인하였다. 이러한 기술과 매체의 발전은 사람들의 의식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고, 이와 같이 변화된 여론과 의식은 다시 법과

44) 법학교육에 관한 하재홍 교수의 다음 논문들은 이런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하재홍, “법과 창의”, 서울법학 23(3), 2016.2; 하재홍·장경원, “법학교육에서의 문제중심학습을 위한 ‘판례’ 활용 전략 탐색”, 서울대학교 법학 50(1), 2009.3 참조.

제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와 법제도가 과거처럼 권위적이고 하향적인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상호적·탈권위적인 관계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과거 군중 속의 1인으로 묻혀 소외되었던 시민들이 각자의 시민성을 발현하고 주권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제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인공지능을 통한 초연결사회의 도래는 각종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고 공유되며 국민들이 알 권리가 높아지고 시민의식, 주권자의식이 급격히 높아지도록 하며 이런 경향성은 급속도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에는 인식조차 되지 못했던 문제들을 전 세계인들이 핸드폰 하나로 빠르게 인식하고 공유하며 이에 대해 공감하고 분노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구비됨으로써, 이것이 곧 디지털 여론의 횡포를 통한 사적 자유의 제약이나 감시사회의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게 된다. 이것은 대부분 헌법문제가 될 수 있고, 정치의 사법화는 헌법재판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헌법판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3.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을 찾아서

1) 미국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시사점: 버클리, 애머스트 등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체제를 시행하는 미국에서 학부 법학교육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의 인식에 비해서는 학부 법학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 중 학부에서 법학전공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종합대학으로 버클리(UC Berkeley),⁴⁵⁾ 노스웨스턴, 시카고 대학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버클리 법학과정(Legal Studies)은 법학분야 이수를 통해 인문학사(BA)를 받을 수 있고, 또 대학원 과정으로 일반법학박사학위(PhD)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이들을 로스쿨에서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⁴⁶⁾

45) 버클리 학부 법학과정은 2021 Best Colleges for Non-Professional General Legal Studies에서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https://www.collegefactual.com/majors/legal-studies-and-professions/general-legal-studies/rankings/top-ranked/>)

46) Undergraduate Program

Legal Studies: BA (offered through the College of Letters and Science, although the program is under the academic supervision of the School of Law faculty)

Graduate Program

버클리 법학과정에서 제공하는 과목들(Legal Studies Courses)을 보면 아래 예시한 과목들에서 보듯이 헌법과 헌법판례의 활용 비중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밑줄은 필자).⁴⁷⁾ 이는 전형적인 법이론이나 법해석론만이 아니라 다른 인문사회과학과 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단순한 강의식 수업보다는 세미나와 글쓰기 등 방식이 주종을 이루는 듯하다.⁴⁸⁾

Legal Studies Courses Spring 2021

39D: Current Political & Moral Conflicts & the Constitution Frosh/Soph Seminar, Pomerantz, 2 units, Area N/A

****This course is lower division and will not count towards the major.****

There are two sections of 39D Spring 2019. Check the Berkeley Academic Guide Schedule for details.

We will read Supreme Court cases, as well as political and legal commentary from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and consider not only the opinions of the Justices, but also why they hold those opinions. We will seek to discover the way in which courts use authority and craft law. Here is an article about the course (video included).

138 001: The Supreme Court & Public Policy, Ben Brown, 4 units, Core (SS) or Area IV or V (Check classes.berkeley.edu for day/time.)

This course examines a number of leading U.S. Supreme Court decisions in terms of what policy alternatives were available to the Court and which ones it chose. Prospective costs and benefits of these alternatives and who will pay the costs and who gets the benefits of them are considered. Among the areas considered are economic development, government regulation of business,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speech and discrimination. Readings are solely of Supreme Court decisions.

Jurisprudence and Social Policy: PhD (offered through the School of Law)

(<http://guide.berkeley.edu/undergraduate/departments/legal-studies/>)

The Ph.D. in Jurisprudence and Social Policy

(<https://www.law.berkeley.edu/academics/doctoral-programs/jsp/about-the-program/>)

47) Legal Studies Courses Spring 2021 (<http://legalstudies.berkeley.edu/legal-studies-courses-spring-2021/>)

48) Legal Studies Courses Spring 2021 (<http://legalstudies.berkeley.edu/legal-studies-courses-spring-2021/>)

177: American Legal & Constitutional History, Brown, 4 units, Core (H) or Area II or III or V

This course explores the history of American legal institutions and doctrine from colonial times to the present. It deals both with the history of American constitutional law (through the study of major U.S. Supreme Court opinions) and with the development of certain important bodies of non-constitutional law, such as the law of property, the law of torts (civil wrongs), and criminal law. In exploring how American law has developed over time the course may serve as something of an introduction to our current legal and constitutional order.

나아가 다른 학부에서 제공되는 법관련 과목들(Law-related Courses Offered by Other Departments)과 법학과정 선수과목(Legal Studies Prerequisites)도 제시되어 있는데, 법학과정 자체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융합적 구성인데다, 법학과정의 선수과목으로 통계학, 철학, 역사학, 사회/행동과학 과목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⁴⁹⁾

버클리 등 종합대학과 달리 학부 중심의 자유전공대학(liberal arts college)으로서 미국 내에서 명성이 높은 애머스트 대학(Amherst College)의 경우 ‘법, 법이론, 사회사상’ (Law, Jurisprudence and Social Thought: LJST) 전공 과정이 유명한데, 동 과정은 법을 자유교양교육의 문맥에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과이다.⁵⁰⁾ 이 전공에서는 법적 소재들을 사용하여 읽기, 논변, 입증의 전통들과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들, 권력과 공동체 사이의 긴장, 사회적 의미와 관행 사이의 경쟁들을 탐구하며, 법 연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독립적인 업무 및 분석, 리서치,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

49) Legal Studies Prerequisites Summer 2021 <http://legalstudies.berkeley.edu/legal-studies-prerequisites-summer-2021/> 이는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숭앙받는 법률가 올리버 웬델 홀츠가 일찍이 “미래의 법률가는 법 이외에 통계학과 경제학을 알아야 한다” 고 한 점을 떠올리게 한다(Vincent Blasi, *Holmes and the Marketplace of Ideas*, 2004 *Supreme Court Review* 1, 2004., 5-6면 참조).

50) The Law, Jurisprudence and Social Thought Major Program(<https://www.amherst.edu/academiclife/departments/ljst/major>). 동 과정에 대한 국내의 소개로는 이국윤, “앰허스트로 가는 길”, 법사학연구 43호, 2011.4, 181-182면; 이영록, 앞의 논문, 15면도 참조. 애머스트 대학 외에도 자유전공학부이면서 유사한 컨셉의 법학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들을 더 찾을 수 있고, 종합대학에서도 융합교육이면서 동시에 pre-law 성격의 융합과정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다.⁵¹⁾ 자유전공대학의 특성을 살려 소규모 토론이나 세미나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업이 많은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자유전공교육의 차원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밑줄은 필자).⁵²⁾

Law, Jurisprudence, and Social Thought 2021

101 Legal Questions: An Introduction to Law, Jurisprudence and Social Thought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the LJST major. It explores the ways in which law combines moral argument, interpretive practice and force in the regulation of social life. Through the close and sustained study of an exemplary case decided by the U.S. Supreme Court, students will attain a nuanced understanding of law as a subject of liberal inquiry. While focused on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legal orders in the United States, the course also will enable students to appreciate law in its broader cross-cultural, historical, and global dimensions.

Section 01: Professor Delaney. Hyflex. Section 02: Professor Sitze. Online only. Each section limited to 20 students with 15 spaces reserved for First-year students. Fall Semester.

103 Legal Institutions and Democratic Practice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institutions and democratic practice. How do judicial decisions balance the preferences of the majority and the rights of minorities? Is it possible to reconcile the role that partisan dialogue and commitment play in a democracy with an interest in the neutral administration of law? How does the provisional nature of legislative choice square with the finality of judicial mandate? By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we will consider various attempts to justify that institution's power to offer final decisions and binding interpretations of the Constitution that upset majoritarian preferences. We will examine the origins and historical

51) The Law, Jurisprudence and Social Thought Major Program(<https://www.amherst.edu/academiclife/departments/ljst/major>)

52) Law, Jurisprudence, and Social Thought 2020 Fall curriculum (<https://www.amherst.edu/academiclife/departments/ljst/courses/2021F?display=curriculum>)

development of the practice of judicial review and consider judicial responses to such critical issues as slavery, the New Deal, and abortion. The evolving contours of Supreme Court doctrine will be analyzed in the light of a continuing effort to articulate a compelling justification for the practice of judicial intervention in the normal operation of a constitutional democracy.

Limited to 40 students. Spring semester. Professor Douglas.

전미변호사협회(ABA)의 법학교육 섹션에서는, 로스쿨 입학에 준비하기 위해서 학부에서 함양해야 할 핵심 기술과 지식, 경험으로, 문제해결, 비판적 읽기, 글쓰기와 편집, 말하기와 듣기, 리서치, 정보의 조직과 운영, 관계형성과 협업, 공적업무와 정의의 증진, 역사·정치 등 배경지식, 법적 경험과 법체계에 대한 친숙함(Exposure to law)을 들고 있는데,⁵³⁾ 이는 마지막 법분야 경험 항목 정도를 제외하면 오늘날의 교양교육이나 자유전공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와 다르지 않으며,⁵⁴⁾ 오늘날 법(학)교육 또한 교양교육과 융합교육, 자유전공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미국의 학부 법학과과정에서 헌법교육, 특히 헌법판례교육이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자질의 함양과도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헌법 및 헌법판례의 강조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학부 이전의 초중등교육을 포함한 시민교육(Civics)의 핵심적 내용이기도 하다는 점, 그리고 시민교육이 각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법원 등과도 긴밀한 협업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⁵⁵⁾

53) ABA Pre-Law(https://www.americanbar.org/groups/legal_education/resources/pre_law/)

54)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 모델’로 제시한 목표들은, 「가. 학문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능력 함양, 나. 비판적 사고능력,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함양, 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라.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마. 공동체 의식, 시민정신 함양, 바.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으로 ABA가 요구하는 바와 거의 다르지 않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표준안(http://konige.kr/sub02_08.php) 참조.

55) 미국 시민교육(civics) 주요 사이트들을 보면(예컨대 Annenberg Classroom <https://www.annenbergclassroom.org/best-civics-sites/> 등 다수) 이들은 그 대상을 중고생이나 일반 시민들로 하면서도 판례를 논의하는 수준은 우리 대학 수준에 버금가

2) 융합교육·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헌법판례교육의 활용

법전원 도입 후 큰 변화는 전통적인 법학교육의 무게 추가 법전원으로 이동하면서 법전원 설치대학의 학부에 법(학)교육의 공백이 크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는 작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법전원의 법학교육은 향후 변호사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적 목표를 분명하게 가진 전문대학원이고 엘리트 교육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부 법학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학부 법학교육은 사법(司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법이 소용되는 모든 분야의 전문법학 교육을 포괄할 수 있으며(입법, 행정, 기업, 시민사회 등), 또한 전문법학을 넘어 오늘날 입헌민주주의가 보편화되는 시대에 비추어 시민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필자는 본 논문 설문조사를 설계하면서, 기왕에 필자가 이론적으로 제시한(광의의) 전문/시민교육 구분을 유지하되,⁵⁶⁾ 이전 논문이 주로 법전원 설치대학 학부 헌법교육 논의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에서 시야를 확장하여, 전문교육을 다시 법전원 설치대학 및 미설치대학의 전문교육으로 나누고, 시민교육을 사범대학에서의 법교육과 대학 교양과목으로서의 시민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그룹A B와 그룹C, D의 비교).

법전원 미설치대학의 법과대학 혹은 법학과의 경우(그룹B), 기존의 법과대학이 수행해오던 전문 법학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되 그것이 과거와 같은 사법시험 준비가 아니라 법전원 진학 등으로 바뀌고, 더불어 법전원이 아닌 다른 직역을 대비한 법(학)교육을 통한 시민 양성을 포함하게 된다.⁵⁷⁾ 또한 그룹C, D는 본래적으로 시민교육의 영역인데, 사회과 교육에서 헌법교육은 시민교육의 핵심인 점,

고,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우리와 같이 단선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컨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게 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대법관들이 로스쿨에서는 물론이고, 초중등과 같은 시민교육 수준에도 직접 뛰어들어서 학생들에게 헌법과 판례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교감하는 부분 등도 주목할 수 있다. 헌법의 대중화への 노력은 국가공동체 전반의 문제이다.

56) 윤성현, 주 2의 논문, 78-88면 참조.

57) 그룹B의 전통적인 법과대학이나 법학과가 인접학과와 통합하거나 혹은 흡수, 폐지되는 등의 변화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로서 경찰행정학과의 법(학)교육 등 비법학과에서의 개별전문법학의 교육문제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은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가장 흔한 예로서의 경찰행정학과의 경우는, 정상우, “경찰행정학과의 학부 법학교육에 대한 평가와 전망”, 경찰법연구 15(1), 2017.6 참조.

또한 헌법은 종래 주로 법학전공의 차원에서만 교육되어왔으나, 이제는 일반교양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으로도 가르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⁵⁸⁾

시민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융합교육의 확대는 오늘날 모든 학문의 추세이고, 법(학)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법전원 설치 대학에서는 앞에서 본 법학 학사과정 금지규정으로 인해 학부 법(학)교육이 가장 큰 공백을 맞았고(그룹A), 각 대학이 각자 힘겹게 돌파구를 찾아왔다.⁵⁹⁾ 이들 대학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융합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liberal arts 혹은 interdisciplinary studies)을 발전시켜가는 방향으로 대응해왔다. 이는 법전원 체제의 도입 때문에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 전반이 변화하는 방향과도 우연의 일치처럼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짐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그룹B는 법학과의 가장 큰 존립기반이었던 종래 사법시험 체제가 무너짐으로 인해 과거처럼 단일한 단과대학이나 학과를 유지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다른 사회과학분야와 융합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에 응한 숙명여대의 경우 단일한 법과대학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전공과목으로서의 미디어법이나 학내 인기교양과목으로서의 사랑과 헌법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과거보다 융합적인 교과를 구성하며, 다양한 진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룹C는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사회교육과의 법교육인데, 이는 학교교육 이면서도 시민교육의 성격을 띠며, 본래적으로 정치·경제·사회 제 분야와 융합적으로 가르치고 배운다. 그룹D의 일반교양으로서의 법(학)교육은 과거에는 낮설었고 이제 걸음마를 좀 뎀 정도라고 하겠으나, 여러 상황의 변화로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정도나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

58) 최근 교양교육 측면에서 헌법교육을 논한 최근 문헌으로는, 차동욱, “빅데이터 시대의 교양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 법학연구 31(3), 2020.8; 김경민,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인권 교육 -문학을 통한 인권 교육의 가능성”, 교양교육연구 14(4), 2020.8 등 참조. 특히 후자는 문학의 측면에서 인권교육의 가능성을 논한 것으로서 주목할 수 있다.

59) 가령 융합전공 혹은 자유전공으로 법학을 도모하는 한양대나 고려대, 성균관대 등의 경우, 연계전공을 운영하는 이화여대, 교양과목 차원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서울대나 연세대 등 다양한 모습이다.

언정 법전문 설치대학이든 미설치 대학이든, 전문교육이든 시민교육이든 간에 학부 법(학)교육이 점점 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대세이며, 헌법교육 및 헌법판례교육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제는 과거 법과대학 시절처럼 이론이나 판례를 나열식으로 전달하거나 혹은 법전문 교육과정을 선행 학습하는 방식의 프리로(Pre-law) 교육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⁶⁰⁾ 그룹A B, C, D 모두 학부 헌법교육 및 헌법판례교육의 방향을 융합교육 확대와 시민교육 강화라는 뉴노멀에 맞추어 준비할 필요가 있다.⁶¹⁾ 또한 단순히 학부 법(학)교육 개선책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학부 교육과 연계하여 법전문 교육과 초중등교육 등 학교교육 전반, 그리고 평생교육 등 시민교육 전반은 물론 법실무와의 협업 혹은 분업까지 고려하여 전방위적 패키지 개혁을 이룰 때 뉴노멀이 더욱 제대로 기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학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법전원의 변화도 함께 추진하고 모색해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학부는 학부 독자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법전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아지고, 평가방식이 개선되는 등 변화가 있어야,⁶²⁾ 이에 따라 학부 법(학)교육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가령 법전문 헌법판례교육이 방대한 내용 암기 중심에서 법적 분석 및 추론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⁶³⁾ 학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중등교육과 시민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초중등교육에서부터 헌법과 헌법판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헌법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되며, 이는 충실한 논변으로 뒷받침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⁶⁴⁾ 우리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

60) 그러나 프리로(Pre-law)가 바람직한 법학교육에 적합한 자질과 소양을 기르는데 적합한 과정을 가르치는 학과라는 의미에서 쓰인다면, 이 용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부정적으로 경계해야 할 프리로는 학문성을 배제하고 대학에서의 법학을 취업과 실용의 도구로 극단화하는 형태의 프리로일 것이다.

61) 다만 그룹A B, C, D 간에 학과의 목적과 학생들의 주된 수요 등에 따라 융합의 정도나 전문/시민교육 간의 강조점은 다를 수 있다.

62) 천경훈,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 상사법연구 36권 1호, 2017 참조.

63) 박중보, “변호사시험에서 헌법판례의 출제방식”, 법학논총 31(2), 2014.6, 286-288면; 송기춘, “헌법 판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세계헌법연구 16(4), 2010.12, 189-193면 참조. 헌재판례교육의 한계에 대해서는 송기춘, 위 논문, 177-179면 참조.

64) 고등학교에서의 헌법판례교육 현황과 강화에 대한 언급으로, 배화순,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제시된 판례 분석과 개선 방안 탐색”, 법교육연구 15(2),

는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권위를 갖는 것은, 대법원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방대법원 판결이 철학적·사회과학적인 논변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설득력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며, 헌법판례가 시민교육과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교육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사법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는 선순환의 생태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실무,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 헌재 결정이 논증을 간소화하거나 생략하고 규범을 권위적으로 ‘선언’ 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실무는 물론 대학 등 학교 교육에서도 논증과정을 둘러싼 논의가 빈곤해지게 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의 헌법판단과정에 풍부한 논증의 경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학술적·시민적 비판과 토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는 사법적 숙의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양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제고하게 되고, 헌법판례를 둘러싼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주권자 교육의 의미를 갖게 된다.

V 결론: 학문의 자유의 확장으로서 헌법판례교육의 재구성

필자는 기왕의 법과대학 체제에서 학사로부터 박사에게 이르기까지 법학교육을 받았고, 로스쿨 체제 도입 원년인 2009년부터 학부 시간강사를 맡기 시작해서 2012년 전임교수가 된 이후 지금까지 앞에서 분류한 4가지 중 교양과목을 제외한 3가지 형태의 헌법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고(한양대 정책학과/법학과, 서울대 사회교육과 등), 또한 학부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강의도 해 보았으며(건국대 법전문), 지난 연구년 기간에는 미국 Berkeley Law school 방문학자로서 로스쿨 헌법 과목을 2학기에 걸쳐 청강하며 문답식 교수법 등 미국의 법학교육방식도 경험하였다. 우리 법(학)교육의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오는 가운데 연구자로서, 또 교수자로서 다양한 헌법교육 환경을 경험하며 고민할 기회를 가졌던 것이 본 논문에 이르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기왕의 법과대학 체제는 과거 고시와 수험법학이라는 강력한 유인책을 가

2020.8; 이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 분석과 개선 모색 -헌법 분야-”, 법교육연구 9(3), 2014.12 등 참조.

지고 기득권을 누리면서 호황을 누렸던 데 안주하여 본연의 학문성을 연마하고 확장시켜나가는데 부족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 새로운 시대적 조류를 이해하고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는데 둔감한 것은 아니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내실이 부족한 자만은 사회에서 혹은 다른 학문영역에서 법학을 배타시하거나 혹은 학문으로보다는 직업의 기예로 좁게 이해하는데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법전문 도입이 강력한 사법개혁과제의 우선순위로 줄곧 대두되었던 것도,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막상 개혁입법의 형태로 미국에서 발전해온 로스쿨 제도를 우리 제도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미국 로스쿨이 가진 제도적 장점을 받아들여 우리의 종전 법학교육 제도가 가진 단점을 대체하자는 형식적 논의 위주로 진행되었을 뿐, 그것이 미국적 토양에서 어떻게 구현되었고 어떤 한계에 봉착했는지, 우리의 토양에 이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조건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전문 도입 그 자체에 몰두하면서, 그것이 학부 법학교육이나 초중등교육에 미칠 영향, 법학의 학문성에 미칠 영향, 나아가 사회에 미칠 파장 전반은 등한시한 느낌이다. 만사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법전문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미국이 학부는 물론 시민교육에서 어떻게 헌법교육과 판례교육을 해왔는지를 되돌아보고, 또한 오랜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전통을 가진 유럽의 헌법교육과 판례교육의 경험도 참고하면서, 우리만의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지능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실존과 본질의 문제를 과거보다 더 절실하게 묻고 있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인간 공동체로서의 국가와 그 규범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사유하고 탐구하는 학문분과이며, 헌법판례는 헌법의 개념·원리를 하위법령이나 실생활 사실관계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산물이기에, 융합교육 혹은 시민교육 등 어떤 형태를 띠든 간에 헌법판례교육은 인간과 국가에 대한 근원적인 탐구로서 학문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 비해 이제 저성장과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청년들의 직업과 생존의 확보가 더욱 절실해진 지금,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이 법전문 진학이나 취직 등 직업적 요소와의 연계를 도외시키고 상아탑의 역할만을 수행하길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고, 오늘날은 어느 영역에서도 이는 가능하지 않다.⁶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의 법(학)교육은 대학이라는 학문공동체 내에

서 학문과 이론, 방법론의 구축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직업이나 실무에도 소용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⁶⁵⁾

-
- 65) 오늘날은 사실 법학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분과가 산학협력과 직업교육 연계라는 실용적 목표 앞에서 타협점과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직업/학문의 단순한 이분법에서 벗어나면서도, 대학이 산업과 민간으로부터 잠식되고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과 학문의 본질과 본연의 영역을 지키려는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 66) 이국운 교수의 질문에 대해 애머스트 대학 오스틴 세릿 교수의 다음 답변은 의미심장하다. “예일 로스쿨을 마치고 애크서스트 칼리지로 돌아와 LJST 학과를 시작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바로 ‘학문의 자유’였습니다. 로스쿨들에게 가장 않은 것은 무엇보다 전문직업교육의 틀 속에서는 아무래도 법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제약받기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국운, 위 논문, 185면)

참고문헌

- 곽한영(2016). 플립드 러닝 (Flipped Learning) 기법을 활용한 법교육 수업모델 연구-대학 학부 헌법 수업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1(1), 43-71.
- 권영준(2016). 로스쿨 교육방법 개선에 관한 단상 (斷想). **법교육연구**, 11(3), 1-46.
- 김경민(2020).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인권 교육-문학을 통한 인권 교육의 가능성. **교양교육연구**, 14(4), 151-163.
- 김대희(2017). 4차산업 혁명시대의 법학교육.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토론회 발제문,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한국법학 교수회 주최.
- 김두얼(2016).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재와 미래: 외부자의 시각. **법경제학연구**, 13(1), 187-218.
- 김창록(2015). 한국 로스쿨의 의의와 과제: ‘로스쿨 시스템’을 로스쿨답게 만들어야. **저스티스**, 190-228.
- 박균성(2015). 법학교육 상생방안. **경희법학**, 50, 433-462.
- 박중보(2014). 변호사시험에서 헌법판례의 출제방식. **법학논총**, 31(2), 283-308.
- 박찬운(2017). 영국 법학교육의 현실과 그것이 한국 로스쿨 교육에 주는 함의. **저스티스**, 398-428.
- 배화순(2020).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제시된 판례 분석과 개선 방안 탐색. **법교육연구**, 15(2), 65-96.
- 성낙인(2012). 헌법학 연구와 교육 방법론 연구. **동아법학**, (54), 67-105.
- 송기춘(2010). 헌법 판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교육. **세계헌법연구**, 16, 175-198.
- 송기춘(2016).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의 변호사 양성과 법학교육. **민주법학**, 60, 309-340.
- 송성민(2019). 플립러닝 (Flipped Learning) 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본질에 입각한 비판적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1387-1410.
- 윤성현(2014).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학부 헌법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론-시민교육과 광의의 전문교육의 투트랙 (two-track) 교육방안. **법교육연**

구, 9(2), 73-103.

윤성현(2015). ‘학부법학교육의 미래’에 관한 토론문.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20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윤성현(2018).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 학부 헌법교육 정상화의 모색. **국가와 헌법1: 헌법총론/정치제도론**. 성낙인 총장 퇴임기념논문집. 서울: 법문사.

이국운(2011). 앰허스트로 가는 길. **법사학연구**, (43), 167-200.

이영록(2017). 제 4 차 산업혁명 시대 학부 법학교육은 어디로?. **법학논총**, 24, 3-23.

이은기(2019). 법학전문대학원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일고 (一考)-교과과정, 교원충원, 평가제도 등을 중심으로. **법조**, 68(4), 349-383.

이효원(2014).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 분석과 개선 모색 -헌법 분야-, **법교육연구**, 9(3), 67-87.

전종익(2015). 학부법학교육의 미래-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0(3), 63-95.

정상우(2017). 경찰행정학과의 학부 법학교육에 대한 평가와 전망. **경찰법연구**, 15(1), 59-80.

차동욱(2020). 빅데이터 시대의 교양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 **법학연구**, 31(3), 45-83.

천경훈(2017).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연구**, 36(1), 229-271.

하재홍(2010). 소크라테스식 (문답식) 교수법. **법학논집**, 14(4), 281-309.

하재홍(2016). 법과 창의. **서울법학**, 23(3), 363-409.

하재홍·장경원(2009). 법학교육에서의 문제중심학습을 위한 “판례” 활용 전략 탐색. **법학**, 50.

Vincent Blasi(2004). Holmes and the Marketplace of Ideas. 2004 Supreme Court Review 1.

[인터넷 사이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교육표준안(http://konige.kr/sub02_08.php)

2021 Best Colleges for Non-Professional General Legal Studies (<https://www.collegefactual.com/majors/legal-studies-and-professions/general-legal-studies/rankings/top-ranked/>)

Annenberg Classroom (<https://www.annenbergclassroom.org/best-civics-sites/>)

Law, Jurisprudence, and Social Thought 2020 Fall curriculum (<https://www.amherst.edu/academiclife/departments/ljst/courses/2021F?display=curriculum>)

Legal Studies Courses Spring 2021 (<http://legalstudies.berkeley.edu/legal-studies-courses-spring-2021/>)

Legal Studies Prerequisites Summer 2021 (<http://legalstudies.berkeley.edu/legal-studies-prerequisites-summer-2021/>)

The Law, Jurisprudence and Social Thought Major Program (<https://www.amherst.edu/academiclife/departments/ljst/major>)

The Ph.D. in Jurisprudence and Social Policy (<https://www.law.berkeley.edu/academics/doctoral-programs/jsp/about-the-program/>)

University of California - Berkeley Undergraduate Program (<http://guide.berkeley.edu/undergraduate/departments/legal-studies/>)

ABSTRACT

In search of the New Normal of the Education
of the Constitutional Law Cases
at the Undergraduate Studies

Sunghyun Yoon(Hanyang University)

Doubt around today's legal education for the Undergraduate calls for emerge of a New Normal for multiple reasons, which include, apparently, weaknesses of current law school system, however, the major motivation behind the New Normal comes from the arrival of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paper studies potential measures to be taken in coping with today's crisis of undergraduate law education in search for the vision of the New Normal by focusing on constitutional education, especially highlighting cases of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This paper introduces a survey result that I designed and executed by sending students Google Survey links to directly respond. Current undergraduate constitutional education can be categorized to ① professional law education as a convergence education ② professional law education at the College of Law ③ civic education at the College of Education, ④ liberal arts education, based on the objective and nature of the education. The survey covered the all four categories through sampling eight different constitutional law courses at Hanyang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aegu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ough the survey, I was again convinced that current status lacks consistency, have different formats and approach in face of great environmental shift.

In journey to define the New Normal, US undergraduate constitutional law

cases education, for being the first to establish the law school system, implies many things. UC Berkeley and Amherst College use constitutional law cases to provide convergence education with other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ather than typical legal interpretation classes, while seminars and writing methods are used rather than simple lecture classes. It is taking a way to cultivate human resources with comprehensive education.

Korea needs to establish a New Normal to expand convergence education and reinforce civic education with utilizing constitutional law cases, especially in undergraduate law education, but I believe the New Normal will be effective and meaningful when a series of reform in all legal educati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civic education is considered and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Key words: legal education, law-related education,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constitutional law cases, civic education. liberal arts education, convergence education, survey

투고일자: 2021.03.31. 심사완료일자: 2021.04.26. 게재확정일자: 2021.04.26.

윤성현: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재직 중(헌법 담당).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관심분야는 민주주의/자유주의 헌법사상·이론·정책, 법교육 등이다. shyoon0811@hanyang.ac.kr